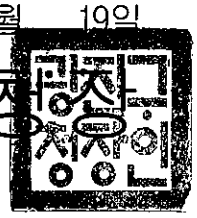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- 544 호

공시송달(공고)

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'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' 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9년 6월 19일

광진구청장 

1. 제　　목: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
2. 대　　상

건축물 위치	소유자	위 반 내 용	반송사유
면목로 59 (중곡동 629-7번지)	이○○ 외 1인	-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내부 복층으로 무단증축 (위반면적: 약53㎡)	환부불능 (폐문부재)

3. 시정촉구 기한: ~ 2019. 6. 14.까지
4. 공고기간: 2019. 6. 19. ~ 2019. 7. 5.(14일 이상)
5. 방　　법: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'고시공고'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(☎. 02-450-77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